

#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의안번호 : 제1331호
- 나. 제안자 : 박강산 의원 (찬성자 12명)
- 다. 제안일 : 2023. 10. 16.
- 라. 회부일 : 2023. 10. 23.

### 2. 제안이유

- 자치구의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기반 구축, 조직체계 및 인력 구축 등의 사항을 신설하여 청년친화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청년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자치구 지원 사항을 규정함  
(안 제12조 제3항 신설)
- 나. 포상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6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청년기본법」,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)
- 다. 입법예고(2023. 10. 26. ~ 10. 30.) 결과 : 의견 없음
- 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(미래청년기획단) : 원안 가결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개요

- 이번 「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자치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직, 인력, 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,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친화도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 제3항은 시장과 각 자치구의 협력 사항으로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, 조직체계, 인력,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, 안 제16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법인·기관·단체·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청년친화도시 지원) ① (생략) ② (생략) <신설>	제12조(청년친화도시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시장은 자치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</u> 1. <u>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</u> 2. <u>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구축</u> 3. <u>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</u> 4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
<신설>	제16조(포상) <u>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·기관·단체·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</u>

## 나. 검토 내용

### (1)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협력사항 (안 제12조제3항제1호~제4호)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지원에 대한 조문인 제12조에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신설하여 각 자치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장이 자치구와 협력해야 하는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
- 신설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법인 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6(청년친화도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8(청년친화도시의 지정)이 규정하고 있는 청년친화도시 지정기준을 반영하고 있어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
- 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6(청년친화도시) 규정의 신설('23.3.21. 일부개정, '23.9.22. 시행)로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, '23.9월 국무조정실은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의 개정('23.9.12. 일부개정, '23.9.22. 시행)을 발표하면서 청년친화도시 지정·운영에 대한 의사를 밝혔음<sup>1)</sup>
- 따라서 서울시 각 자치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·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의 가능성을 높이고, 서울시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시기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됨

**「청년기본법」** (23.3.21. 일부개정, '23.9.22. 시행)

**제24조의6(청년친화도시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, 청년발전,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(이하 이 조에서 "청년친화도시"라 한다)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) [보도자료]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집니다!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 국무회의 의결, 2023. 9. 5. 국무조정실

- 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·절차,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** (‘23.9.12. 일부개정, ‘23.9.22. 시행)

**제21조의8(청년친화도시의 지정)** ① 법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도시(이하 “청년친화도시”라 한다)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
  2.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
  3. 청년참여, 청년발전, 청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한 업무 실적이 있을 것
  4. 그 밖에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춘 것
- ② ~ ④ (생략)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.

(2) 포상규정 (안 제16조)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법인·기관·단체·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,
- 「청년기본법」 제25조(포상)에서는 청년 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「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24조(표창)에서도 청년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‘청년친화도시 조성’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취지와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의의가 있다고 생각됨

**「청년기본법」**

**제26조(포상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·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

**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**

**제24조(표창)**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## 다. 종합 의견

- 이번 「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신설하여 각 자치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·구 협력사항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, 안 제16조에서는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‘청년친화도시 조성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- 「청년기본법」(’23.3.21. 일부개정, ’23.9.22. 시행)과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(’23.9.12. 일부개정, ’23.9.22. 시행)의 개정으로 국무총리의 청년친화도시 지정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, 서울시 각 자치구의 청년친화도시 지정과 이를 통한 서울시 청년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음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종합해보면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점, 서울시 청년 정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타당성이 인정되며 내용도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